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함(안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
-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39의2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4. 2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9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술자격
특급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점검자	—	—
고급 점검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기술인력의 경력 산정 시 자체점검 배치신고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으로 적용한다.
2.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시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관련 업무 및 화재안전조사 등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지 앞쪽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주의사항

1.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 급 번 호 : _____
 등 급 : _____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발행연월일 : _____

사진

(가로 2.5cm×세로 3cm)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발급기관장명 직인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등 록 일	등 록 번 호

(4 쪽)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전공)	학 위

(5 쪽)

상훈 · 제재사항

연 월 일	종 류	상훈 · 제재기관	근 거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기 관 명	확 인

(6 쪽)

경력사항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7 쪽)

변동사항

일 자	변 경 항 목	변 경 후 내 용	확 인

표지 앞쪽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 150g/㎡]

주의사항

1.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 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 납하여야 합니다.

(2 쪽)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발 급 번 호 :	사진 (가로 2.5cm×세로 3cm)
등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발 행 연 월 일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발급기관장명 직인	

(3 쪽)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등 록 일	등 록 번 호

(4 쪽)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전공)	학 위

(5 쪽)

상훈 · 제재사항

연 월 일	종 류	상훈 · 제재기관	근 거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기 관 명	확 인

(6 쪽)

경력사항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7 쪽)

변동사항

일 자	변 경 항 목	변 경 후 내 용	확 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 150g/㎡]

주의사항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 급 번 호 : _____

등 급 : _____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발행연월일 : _____

사진

(가로 2.5cm×세로 3cm)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발급기관장명 직인

이 경력수첩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가능

(3 쪽)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등 록 일	등 록 번 호

(4 쪽)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전공)	학 위

(5 쪽)

상훈·제재사항

연 월 일	종 류	상훈·제재기관	근 거

교육훈련

기 간	과 정 명	기 관 명	확 인

(6 쪽)

경력사항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변동사항

일 자	변 경 항 목	변 경 후 내 용	확 인

CERTIFICATE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전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번호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등급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기관장명 직인

▲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임 사항

등 록 번 호	상 호	선임일	선임신고일

이 경력수첩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경력수첩의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